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주연의원 외 21인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10.29.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858,000원”을 “1,970,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858,000원”을 “1,970,000원”으로 조정하였음.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구미시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월정수당 연2,365만원과 의정활동비 연1,320만원을 합한 연3,685만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